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2012년 12월 pp.279～308
한국세무학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감리지적을 중심으로-

문두철* · 박우진** · 이상일***

<요 약>

본 연구는 내부회계제도 담당 인력의 구성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담당인력 공시를 시작한 2002년도부터 2008년 까지 총 7개년간 담당인력을 공시한 코스피 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담당 인력의 특성 변수로는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담당인력의 비율, 공인회계사 포함 유무, 담당자의 평균경력 기간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른 회계정보의 신뢰성의 대용치로 감리지적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담당인력의 비율과 공인회계사 포함유무는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인력의 경력이 높을수록 감리지적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 경력이 높은 인력일수록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제도의 목적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담당인력의 양적인 특성(담당인력 비율)과 질적인 특성(공인회계사 포함유무, 경력의 길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담당인력이 있고, 경력이 긴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감리지적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추가 검증에서는 감리지적 가능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고경력자의 효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위해 경력이 많은 인적자원의 투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전산부서나 기타부서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보다는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회계관련부서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dmoon@yonsei.ac.kr, 02－2123－5458,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조교수, hawkmaint@yonsei.ac.kr, 033－760－2344, 제1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sangili@yonsei.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2월　　1차수정일 2012년 3월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는, 내부회계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담당인력을 통해서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중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대용치인 감리지적 여부에 관해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주제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지적,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Ⅰ. 서 론

미국은 Enron 사건 이후 Sarbanes－Oxley 법안에 따라 내부통제를 구축할 책임이 경영진에 있으며 매년 말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을 외부 감사인이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산규모 500억 이상[1]인 기업은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회계부정과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거나 적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 기능이 약해 회계 오류 및 경영자의 부정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2002년 9월 공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기업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별 인력의 수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2.3)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도입대상의 경우 기존 비상장 기업의 자산규모 500억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생략)

하였다.[3]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이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증가하면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제도의 목적인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내부회계제도 담당 인력의 구성이 보다 강건하다면 실제로 신뢰할만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의 투자와 기업에서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대용치로는 감리지적 여부를 이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감독수단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회계감리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의 기재사항이 진실하거나 정확하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감법에 의거하여 감사인 및 피감사 기업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에서 공표한 재무보고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감독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리지적 여부는 감독기관에서 판단한 가장 직접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바로 내부회계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담당인력을 통해서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고 공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반응을 살펴보거나, 기업특징을 살펴보거나, 이익의 질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담당 인력의 특성을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한 논문들은 아직 미미한 실적이다.

그리고,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중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대용치인 감리지적 여부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다.

첫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당국에서는 이러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 내부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2.9.27)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2002년 12월 결산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추가하여 공시토록 하였다.

회계제도와 관련된 담당 인력의 적정 규모 설정 등의 신규제도 마련에 본 연구가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회계제도의 인력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내부회계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로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의사결정 시 내부회계제도의 인력투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주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제Ⅴ장에서는 추가적인 검증 결과를 제시하며,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전체적인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가.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개념 및 선행연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4]에서는 내부통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운영 목적, 법규목적, 재무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5]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

4)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공시하는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규준을 말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1장 1)

5) • 운영목적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 재무보고목적 :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 법규준수목적 :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목적,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현우와 유경연(2006)의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전 연도인 2004년과 도입 이후 연도인 2005년의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의무시행이전에 비해 이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손성규와 정기위(2009)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효과성을 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항목의 회계오류금액의 기간별/기업별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2005, 2006)가 도입 전(2003, 2004)에 비해 회계오류발생금액과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오류발생금액과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안상봉과 최승호(2008)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이전 연도인 2003년과 2004년 도입 이후 연도인 2005년과 2006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를 비교하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 연구,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익조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Ge & McVay(2005)는 SOX404 법안 발효 이후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26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점은 주로 숙련된 회계 전문인력의 부족에함에서 나타났다. 또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은 사업의 복잡성이 크고 기업규모가 작음을 발견하였다. Krishnan(2005)은 감사위원회의 품질과 내부통제제도의 품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에 대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일수록 내부통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인하여 중요한 취약점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Doyle et al.(2007)는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일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았으며 신생기업이었고 재무적으로 부실하였으며 사업부문이 복잡하였고 성장성이 높았으며 구조 조정하에 있는 기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 있어서 신현걸(2007)은 상장,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3,2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간의 단일변량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곤 등(2007)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의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법인의 규모가 클 수록 취약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시장에서의 반응을 살펴본 논문들이다. Beneish et al.(2008), Hammersley et al.(2008)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고 공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을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참가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기업의 공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해당기업의 주가가 공시시점에 하락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로 최순재, 김용식, 김유찬(2009)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이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수익률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상장법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취약점을 보고한 공시일 전・후 3일, 5일간 누적초과수익률(CAR) 및 규모・산업별지수・영업이익률을 조정한 누적수익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값으로 분석되었다. 코스닥상장법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취약점을 보고한 공시일 전・후 3일, 5일간 규모・산업별지수・영업이익률을 조정한 누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취약점의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Hogan (2005)은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로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록 감사인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늘어남으로써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부통제가 취약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적절한 입증절차를 수행한다면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명곤 등 (2007)의 논문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뿐 아니라 이러한 기업이 공시하는 이익의 질과 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은 이익조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조현우, 유경연(2006)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전 연도인 2004년과 도입 이후 연도인 2005년의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의무시행이전에 비해 이후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Choi et al.(2009)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인력 비율이 클수록 회사들의 경우 이익조정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나. 감리지적에 대한 선행연구

감리지적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감리지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감리지적에 대한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감리지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Dechow et al.(1996)는 1982년부터 1992까지 SEC로부터 GAAP을 위반하여 지적당한 92개 기업과 산업, 규모, 기간을 대응시킨 통제기업들을 사용하여 이익조작의 동기와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작의 동기는 외부 자금조달과 내부자 거래를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익조작 기업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특성을 보였는데 사외이사비율이 낮으며 외부대주주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CEO가 기업설립자이거나 이사장인 경우가 많았다.

Beneish(1999)는 1987년부터 1993년 동안 미국 SEC에 의해 GAAP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언론을 통해 이익조작이 공개된 74개의 분식회계기업과 2,332개의 대응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작과 재무제표 변수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채권회수기간 변화지수, 매출총이익률 변화지수, 매출성장률지수, 발생액지수가 이익조작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easley et al.(1999)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SEC의 감리활동결과 분식회계로 판명된 200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식회계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으로 경영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식의 규모는 회사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회계연도보다는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관과 백원선(1998)은 증권감독원에서 이익을 조작한 사유로 감리에 지적된 기업을 통제기업과 비교・분석하여 이익조작과 재무제표 변수간의 관계를 밝혔다. 그 결과 금융비용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전기손익수정손익이 클수록,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조작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과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증가율 등은 이익조작기업과 통제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최관과 최국현(2003)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감리에서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감리대상이 된 기업들을 감리지적기업과 감리비지적기업으로 나눈 후 각 특성변수들이 양 기업집단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의 감리에서는 많은 특성변수들이 감리지적기업과 감리비지적기업간에 체계적이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감리지적기업들은 비지적 기업들에 비해 경영성과가 저조하고 현금흐름이 적으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액주주의 구성비율이 높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많았다. 또한, 감리지적기업은 감리비지적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컸고 순이익 대비 전기손익수정손실의 크기가 컸으며, Big 5제휴법인보다 국내법인에 의하여 감사받은 기업이 감리지적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는 감리지적기업들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김문철과 황문호(2007)는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기업에서 나타나는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식회계 적발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과 이 기업들과 회계연도 및 산업분류가 일치하는 모든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재무변수들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변화지수, 유동비율, 금융비용부담율, 기업규모, △발생액,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비율, 자산품질지수, 전기손익수정손실 등이 분식회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유동성이 악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유발되고, 발생액이 증가될수록, 재고자산과 비영업성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순이익 대비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많이 계상될수록 분식회계의 징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지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감리지적기업과 그에 대응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감리지적기업의 재무적, 지배구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거나 분식회계 예측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2. 가설 설정

Ge and McVay(2005)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lack of qualified accounting personnel)'이라고 하였다. Choi et al.(2009)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제도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부실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관점에서, 감사위험(audit risk)이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감사위험은 고유위험,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으로 구성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 경우 통제위험이 낮아져서 감사위험도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통제위험이 높아져서 감사인이 통제하는 적발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통제위험이 높아지더라도 감사인이 적발위험을 잘 통제하면, 감사위험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2010년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92%의 기업이 12월 결산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감사인이 적발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12월 결산법인이 감리대상기업에 선정되어 감리를 받은 결과 감리지적이 된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김구배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리지적 유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감독기관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제도는 현행법령체계에서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감독수단으로는 언급 되고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이다. 만일, 감리제도에서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 감리지적유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측정 즉, "재무제표의 신뢰성" 측정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리제도의 근거법률인 외감법의 변천과정 중 제12차 당초개정안 및 심사보고서[6]를 통해 감독기관의 회계감리의 수행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6월 27일 이명규위원 등 12인은 외감법 제12차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의 감사인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감독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제무제표 등에 대한 감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법률에 의한 감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회사의 재무제표도 감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감리의 개념을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감사인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외감법 조항에 이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7] 따라서, 위의 외감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았을 때 현행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제로 비중있게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리지적 유무는 감독기관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감리제도에서는 감리대상 기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감리대상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은 재무보고가 적정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점을 가진다.[8]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감리지적 유무 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2차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14호 [당초개정안], [심사보고서] 출처 : likms.assembly.go.kr(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7)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에는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개정내용을 검토한 심사보고서 상에는 반영 불가 사유 중 하나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사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감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1999년에 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명시된 일반감리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는 “이 문제가 이러한 변수를 사용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존재하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손성규와 이호영, 2008)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특성 중 변수 중 하나로 선행연구(Choi et al. 2009, 이준일 등. 2010)에서 사용한바 있는 기업별 전체 종업원수 대비 내부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인력비율을 사용하였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내부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많은 것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담당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아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담당자의 수와 감리지적 가능성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보다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할수록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와 감리지적여부와의 관계이다. Ge and McVay(2005), 이명곤 등(2007) 회계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부족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효과적인 제도의 수행을 위해 많은 기업에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공시 내용 중에는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회계전문가이며 이러한 공인회계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투입한 기업은 그 인력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보유유무와 감리지적 가능성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1999년에 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일반감리 선정기준은 필수선정, 표본우선선정, 그리고 표본잔여선정으로 나누어진다. 필수선정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회사이다.

① 부채비율이 동업종 회사 중 가장 높은 회사
② 총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비율이 동업종 회사 중 가장 높은 회사
③ 매출액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의 비율이 동업종 회사 중 가장 높은 회사
④ 자기자본에 대한 최대주주 등에의 현금대여금의 비율이 동업종 회사 중 가장 높은 회사
⑤ 수시감리를 받지 않고 상장된 기업
⑥ 총자산과 매출액의 평균액 대비 회계변경으로 자기자본에 미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회사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내부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인원들의 경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내부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인원들의 평균 경력이 길수록 해당업무의 반복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고 실무를 보다 깊게 이해함으로서 회계정보의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내부관리회계제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회계제도 담당인력의 평균경력은 감리지적 가능성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평균경력이 길수록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특성을 가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인력의 양과 질적특성을 가진 공인회계사 보유여부 및 인력의 경력은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4)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양과 공인회계사 보유여부 및 평균경력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표 본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담당인력 공시를 시작한 2002년도부터 2008년 까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보험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database에서 재무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에 대한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s.or.kr)의 사업보고서에서 수집하였으며 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감리지적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적발위험의 통제를 위하여 12월 결산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간 중 상장폐지된 기업과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제외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수집된 본 연구의 최종표본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3,774기업－연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감리지적된 기업－연도는 46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감리지적된 기업－연도는 3,728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 연속변수의 경우 극단치를 상위 1%와 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2. 연구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이 감리지적 유무에 미치는 영향, 즉, 가설 1, 2, 3을 검증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ENFit = \beta_0 + \beta_1 Rate_Interit + \beta_2 CPAit + \beta_3 EXPit + \beta_4 Rsalesit + \beta_5 DtoAit + \beta_6 FCRit + \beta_7 ROAit + \beta_8 CFOtoCLit + \beta_9 PRERRit + \beta_{10} BIG4it + \beta_{11} Aud_Opnit + \beta_{12} First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

ENF : 감리지적을 당한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
Rate_Inter :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수의 비율
CPA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 중 공인회계사가 있으면 1, 아니면 0.
Exp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의 내부회계 관리업무 평균경력년수.
- EXP_acc=회계 및 자금 부서의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원의 평균경력월수
- EXP_it =전산부서의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원의 평균경력월수
- EXP_ot =기타 내부회계 관련부서의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원의 평균경력월수

Rsales : 기업규모(매출액에 대한 등급 값; 매출액 기준으로 0에서 4까지 설정한 등급 변수)
DtoA : 자산대비 부채비율(총부채 / 총자산)
FCR : 금융비용부담율(금융비용 / 매출액. 단, 금융비용=이자비용+사채이자)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t / 총자산t−1)
CFOtoCL :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현금흐름 / 유동부채)
PRERR : 전기오류수정손익(|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오류수정이익| / |당기순이익|)
BIG4 :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ud_Opn :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 : 초도감사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YEARDUM : 연도 더미 변수
INDDUM : 산업 더미 변수

가. 검증변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

기업별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에 대한 정보는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서 수집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2년 9월 발표한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별 인력의 수를 2002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 자금, 전산, 그리고 기타부서의 6가지 부서로 구분하여, 각 부서별 총 인력수와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의 수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부서별 공인회계사 숫자와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의 평균경력도 공시해야 한다.

앞서 제시된 3개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Rate_Inter(전체 종업원 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수의 비율), CPA(공인회계사 포함 여부), yr_Exp(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의 평균경력 년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yr_Exp 변수는 세부 부서별 인원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계 및 자금 부서, 전산부서, 기타 내부회계 관련부서로 세분화하였다.

나. 종속변수 : 감리지적 기업 여부

다. 통제변수

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감리지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 7가지를 사용하였다. 감리지적기업의 분식회계 유인과 관련된 변수로 기업규모, 총자산순이익률, 자산대비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선정하였고 감사 관련 통제변수로는 감사인의 Big4 유무를 선정하였다.

Beasley et al.(1999)은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최관과 최국헌(2003), 김문철과 황문호(2007)는 기업의 규모와 감리지적 여부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설정한 등급 변수(0에서 4까지 설정)를 사용하였다. 매출액 등급 변수를 기업규모의 통제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기업규모인 자산 총액보다 당기의 규모에 가중치가 주어진 매출액이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업규모와 검증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력을 높이고자 5단계 등급변수로 설정 하였다. 앞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감리지적 여부와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Burstahler와 Dichev(1997)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이익조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최관과 최국현(2003), 김문철과 황문호(2007)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가 감리지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과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은 감리지적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조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일수록 분식회계의 유인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감리지적여부는 총자산순이익률과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 부담율과는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관과 최국현(2003)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낮을 때 경영자는 부실공시를 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감사인의 부실감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동부채 대비 현금흐름을 통제변수에 설정하였으며 감리지적여부와는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관과 최국현(2003)은 전기손익수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부실공시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영자가 당기의 이익을 부풀리고자 고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이익을 과대계상한 후 차기에 이를 수정한 경우로 이러한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부실공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기손익수정손실과 감리지적여부와는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관과 최국헌(2003), 김정애(2007)는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인 경우 회계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되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기업에서 회계정보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오류로 잘 못 기재

된 경우에도 기업 외부의 감사인의 양질의 감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기업이 감리에 지적되는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 유무는 감리지적여부와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감사의견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으며, 비적정감사의 견의 경우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리지적 여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리지적의 결과는 기업의 행위와 감사인의 적발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감사인의 적발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계속감사인지 초도감사인지 여부(신용인 등, 2007)를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4)의 연구 모형들을 설정하였다.

$$ENFit = \beta_0 + \beta_1 Rate_Interit + \beta_2 Rsalesit + \beta_3 DtoAit + \beta_4 FCRit + \beta_5 ROAit + \beta_6 CFOtoCLit + \beta_7 PRERRit + \beta_8 BIG4it + \beta_9 Aud_Opnit + \beta_{10} First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 \quad (1)$$

$$ENFit = \beta_0 + \beta_1 Rate_Interit + \beta_2 EXP_dit + \beta_3 Rate_Interit * EXP_dit + \beta_4 Rsalesit + \beta_5 DtoAit + \beta_6 FCRit + \beta_7 ROAit + \beta_8 CFOtoCLit + \beta_9 PRERRit + \beta_{10} BIG4it + \beta_{11} Aud_Opnit + \beta_{12} First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 \quad (2)$$

$$ENFit = \beta_0 + \beta_1 Rate_Interit + \beta_2 CPAit + \beta_3 Rate_Interit * CPAit + \beta_4 Rsalesit + \beta_5 DtoAit + \beta_6 FCRit + \beta_7 ROAit + \beta_8 CFOtoCLit + \beta_9 PRERRit + \beta_{10} BIG4it + \beta_{11} Aud_Opnit + \beta_{12} First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 \quad (3)$$

$$ENFit = \beta_0 + \beta_1 Rate_Interit + \beta_2 CPAit + \beta_3 EXPit + \beta_4 EXP_dit * Rate_Interit + \beta_5 EXP_dit * CPAit + \beta_6 Rate_Interit * EXP_dit * CPAit + \beta_7 Rsalesit + \beta_8 DtoAit + \beta_9 FCRit + \beta_{10} ROAit + \beta_{11} CFOtoCLit + \beta_{12} PRERRit + \beta_{13} BIG4it + \beta_{14} Aud_Opnit + \beta_{15} Firstit + YEARDUM + INDDUM + \varepsilon \quad (4)$$

EXP_d : 중위수보다 큰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표 1>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는 전체 표본기업에 대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감리지적은 전체 표본 중 1.2%수준 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의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수의 비율(Rate_Inter)의 평균은 4.4%(중위수는 2.3%)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를 한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표본 중 평균 9.6%에 불과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의 내부회계관리업무에 대한 경력은 평균 7.6년(중위수 7.0년)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45.4%(중위수 45.8%),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의 비율은 평균 2.1%(중위수 1.2%), 총자산순이익률은 평균 2.4%(중위수 3.8%), 유동부채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평균 23.0%(중위수 16.8%)로 나타났다. 순이익 대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평균 1.2%(3분위수 0)에 불과하여 순이익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가진 빈도수도 적었다. 감사인은 평균적으로 64.6%가 Big4제휴 법인임을 알 수 있다. 감사의견의 경우 99.4%가 적정의견을 받았고, 대상기업중 74.7%가 계속감사기업이었다.

〈표 1〉 기술통계량

Panel A : 전체표본

변수	평균	Q1	중위수	Q3	표준편차
ENF	0.012	0	0	0	0.110
Rate_Inter	0.044	0.013	0.023	0.044	0.088
CPA	0.096	0	0	0	0.296
Exp	7.586	4.439	7.012	9.984	4.852
Rsales	2.000	1	2	3	1.414
DtoA	0.454	0.302	0.458	0.603	0.201
FCR	0.021	0.004	0.012	0.026	0.028
ROA	0.024	0.007	0.038	0.077	0.115
CFOtoCL	0.230	0.002	0.168	0.383	0.425
PRERR	0.012	0	0	0	0.297
Big4	0.646	0	1	1	0.478
Aud_Opn	0.994	1.000	1.000	1.000	0.076
First	0.747	0.000	1.000	1.000	0.435

〈표 1〉 기술통계량 (계속)

Panel B : 감리지적과 미지적 표본

변수	감리지적(n=46)		미지적(n=3728)		차이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Rate_Inter	0.045	0.024	0.044	0.023	0.001	0.001
CPA	0.152	0	0.096	0	0.056	0
Exp	5.658	4.540	7.610	7.045	−1.952**	−2.505**
Rsales	1.913	1.500	2.001	2	−0.088	−0.5
DtoA	0.596	0.603	0.452	0.457	0.144**	0.146**
FCR	0.043	0.034	0.020	0.012	0.023**	0.022**
ROA	−0.081	−0.019	0.025	0.039	−0.106**	−0.058**
CFOtoCL	−0.009	0.021	0.233	0.169	−0.242**	−0.148**
PRERR	0.049	0	0.012	0	0.037	0**
Big4	0.543	1	0.647	1	−0.104	0
Aud_Opn	0.935	1	0.997	1	−0.06	0**
First	0.826	1	0.751	1	0.075	0

주1) 평균의 차이는 t−검증, 중위수의 차이는 wilcoxon−순위합검증.
주2)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3) ENF : 감리지적을 당한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
Rate_Inter :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수의 비율
CPA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 중 공인회계사가 있으면 1, 아니면 0.
EXP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원의 평균경력 년수
Rsales : 기업규모(매출액에 대한 등급 값; 매출액 기준으로 0에서 4까지 5단계로 설정한 등급 변수)
DtoA : 자산대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FCR : 금융비용부담율(금융비용/매출액. 단, 금융비용＝이자비용＋사채이자)
ROA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t/총자산t−1)
CFOtoCL :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현금흐름/유동부채)
PRERR :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오류수정손실/당기순이익|)
BIG4 :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ud_Opn :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 : 초도감사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Panel B는 감리지적 유무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한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변수별로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t−검증)와 중위수의 차이(wilcoxon−순위합검증)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원의 비율변수(Rate_Inter)에 있어서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감리지적그룹의 인력비율 변수는 평균 4.5%(중위수 2.4%)로 감리비지적 그룹의 인력 비율 변수의 평균 4.4%(중위수 2.3%)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공인회계사의 포함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나 예상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감리지적 그룹이 평균이 15.2%로 감리비지적 그룹의 평균인 9.6%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담당인력의 경력은 감리지적그룹에서는 평균 5.7년(중위수 4.5년)이었으나 감리 비지적그룹에서는 평균 7.6년(중위수 7.0년)으로 평균 1.9년(중위수 2.5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 자산대비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은 유의하게 감리지적그룹이 비지적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감리지적그룹이 비지적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감사의견의 경우에는 중위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이 많았으며, 감사의견의 경우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이 비적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표 2>는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감리지적 유무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 전기오류수정손실과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비용이 크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큰 기업일수록 감리에 지적당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총자산순이익률,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감사의견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순이익이 낮고 순영업현금흐름 유출이 많고,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일수록 감리에 지적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관계수 분석결과 계수 중 가장 큰 값이 0.4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ENF	1												
② Rate_Inter	0.001	1											
③ CPA	0.021	−0.048**	1										
④ EXP	−0.044**	0.024	−0.103**	1									
⑤ Rsales	−0.007	−0.273**	0.261**	−0.035*	1								
⑥ DtoA	0.078**	−0.134**	−0.012	−0.029	0.186**	1							
⑦ FCR	0.091**	0.136**	−0.041*	−0.049**	−0.150**	0.447**	1						
⑧ ROA	−0.101**	−0.142**	0.113**	0.012	0.252**	−0.256**	−0.347**	1					
⑨ CFOtoCL	−0.063**	−0.041*	0.161**	−0.027	0.129**	−0.367**	−0.244**	0.375**	1				
⑩ PRERR	0.056**	−0.010	0.002	−0.034*	−0.027	−0.009	0.018	−0.027	−0.014	1			
⑪ Big4	−0.024	−0.079**	0.164**	−0.034*	0.301**	0.006	−0.069**	0.118**	0.090**	−0.026	1		
⑫ Aud_Opn	−0.081**	−0.052**	0.021	0.028	0.012	−0.093**	−0.107**	−0.005	0.069**	−0.005	0.020	1	
⑬ First	0.015	−0.018	−0.016	0.035*	0.008	−0.002	−0.028	0.026	0.024	−0.004	0.036**	0.005	1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2.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표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담당인력과 감리지적의 회귀분석 결과1

변 수	회귀계수	χ^2값
Intercept	−15.036	0.01
Rate_Inter(가설1)	−0.794	0.06
CPA(가설2)	0.791	2.54
Exp(가설3)	−0.076	4.01*
Rsales	0.215	1.54
DtoA	1.801	2.18
FCR	4.497	0.42
ROA	−2.270	9.74**
CFOtoCL	−0.990	2.49
PRERR	3.086	7.91**
Big4	−0.156	0.14
Aud_Opn	−0.864	0.68
First	0.244	0.28
연도/산업더미 효과	포함	
표본수	3,774	
Nagelkerke R^2	0.2854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표 3>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특성에 따른 감리지적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24.5%였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Rate_Inter와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CPA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인 인력의 경력년수(Exp)와 감리지적 유무(ENF) 변수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089, 4.65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평균경력이 1년 긴 기업은 짧은 기업에 비하여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7.32%(1−0.9268(=$e^{-0.076}$)) 낮아짐을 의미하며 앞서 설정한 (가설3)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 업무에 경력이 많은 인력일수록 보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가설1) 및 (가설2)와 관련된 변수인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수의 비율이나 공인회계사 존재 유무 변수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CFOtoCL)과는 유의한 음(−) 관계를 전기오류수정손실 변수(PRERR)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고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이 크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작은 기업일수록 감리에 지적당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머지 기업규모(Rsales), 자산대비 부채비율(DtoA), Big4, 감사의견(Aud_Opn), 초도감사여부(First) 변수는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통제변수 중 회귀계수의 예측과 결과의 부호가 반대인 변수는 기업규모(Rsales) 및 초도감사여부(First)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표 4〉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과 감리지적 상호작용모형 회귀분석 결과

	(1)		(2)		(3)		(4)	
변수	회귀계수	χ^2값	회귀계수	χ^2값	회귀계수	χ^2값	회귀계수	χ^2값
Intercept	−15.503	0.01	−14.346	0.00	−15.290	0.01	−14.258	0.00
Rate_Inter	−0.926	0.08	8.663	2.40	−1.096	0.11	8.512	2.26
CPA					0.770	1.52	0.807	1.34
Exp_d			1.445	4.92*			1.495	5.16*
Rate_Inter∗Exp_d			−130.3	9.03**			−127.4	8.88**
Rate_Inter∗CPA					3.804	0.06	0.302	0.00
Rate_Inter∗Exp_d∗CPA							−37.894	0.08
Rsales	0.284	2.89	0.155	0.75	0.224	1.67	0.097	0.27
DtoA	1.630	1.89	2.192	3.17	1.618	1.84	2.189	3.13
FCR	4.923	0.51	1.401	0.04	4.869	0.49	1.167	0.03
ROA	−2.421	11.16**	−2.054	8.35**	−2.363	10.57**	−2.031	8.15**
CFOtoCL	−0.981	2.47	−1.021	2.80	−1.028	2.69	−1.065	3.03
PRERR	2.989	6.75**	4.038	11.54**	3.036	7.19**	4.107	12.02**
Big4	−0.177	0.19	−0.275	0.41	−0.215	0.27	−0.298	0.47
Aud_Opn	−0.809	0.58	−1.331	1.38	−0.868	0.67	−1.350	1.42
First	0.249	0.30	0.421	0.78	0.216	0.22	0.394	0.69
연도/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3,774		3,774		3,774		3,774	
Nagelkerke R^2	0.2719		0.3262		0.2788		0.3311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EXP_d : 중위수보다 큰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
다른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표 4>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특성을 양적특성(담당인력비율)과 질적특성(회계사 보유여부, 담당 경력의 정도)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모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27.19%에서 33.11%로 단순모형보다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검증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모델(2)와 모델(4)에서 Rate_Inter*Exp_d 변수가 계수값과 유의성(모델 2 : −130.3, 9.03, 모델 4 : −127.4, 8.88)이 가장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담당인력의 경력은 담당인력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회계사보유여부는 담당인력 비율과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담당인력비율(Rate_Inter)와 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고경력기업(Exp_d)과 공인회계사보유여부(CPA)가 상호작용 효과로 감리지적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4)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추가분석

<표 5>는 <표 3>의 회귀식에서 담당인원의 경력년수(yr_Exp)와 기업규모(Rsales)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26.8%로 나타났다. 앞서 <표 3>의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담당인력의 경력연수는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297, 4.652)를 나타내고 있으며 담당인원의 경력년수(yr_Exp)와 기업규모(Rsales)와의 상호작용 변수는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092, 10.83)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리지적 가능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고경력자의 효과(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규모가 적은 기업일 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위해 경력이 많은 인적자원의 투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담당인력의 경력 및 기업규모와 감리지적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χ^2값
Intercept	−13.824	0.01
Rate_Inter	0.884	0.07
CPA	0.845	2.85
Exp	−0.424	13.56**
Exp*Rsales	0.129	13.21**
Rsales	−0.509	4.10*
DtoA	2.062	2.66

〈표 5〉 담당인력의 경력 및 기업규모와 감리지적의 회귀분석 결과 (계속)

변 수	회귀계수	χ^2값
FCR	4.114	0.33
ROA	−1.920	6.65**
CFOtoCL	−0.934	2.32
PRERR	2.846	6.79**
Big4	−0.164	0.14
Aud_Opn	−0.937	0.80
First	0.273	0.35
연도/산업더미 효과	포함	
표본수	3,774	
Nagelkerke R^2	0.318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표 6>은 <표 5>의 회귀식에서 담당인원의 경력년수(yr_Exp)를 세부 부서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담당인력 공시의 부서별 구분은 회계, 자금, 전산, 그리고 기타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부서를 본 회귀식에서는 회계 및 자금관련 부서(EXP_acc), 전산부서(EXP_it), 기타부서(EXP_ot)로 세부부서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27.4%로 나타났으며, 세부부서 중 회계 및 자금관련 부서의 경력월수(EXP_acc)만이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040, 6.379)를 나타내고 있다. 회계 및 자금관련 부서의 경력월수(EXP_acc)와 기업규모(Rsales)과의 상호작용변수는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011, 7.902)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전산부서나 기타부서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보다는 회계관련부서의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관련부서의 내부회계담당자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표 6〉 담당 부서별 경력 및 기업규모와 감리지적의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χ^2값
Intercept	−14.638	0.01
Rate_Inter	0.610	0.03
CPA	0.671	1.59
EXP_acc	−0.034	3.98*
EXP_it	0.004	0.01
EXP_ot	−0.012	0.11
EXP_acc∗Rsales	0.010	4.52*
EXP_it∗Rsales	−0.006	0.21
EXP_ot∗Rsales	0.001	0.02
Rsales	−0.029	0.02
DtoA	2.052	2.60
FCR	3.452	0.22
ROA	−2.054	7.37**
CFOtoCL	−0.856	1.88
PRERR	3.190	8.64**
Big4	−0.278	0.42
Aud_Opn	−0.766	0.49
First	0.276	0.35
연도/산업더미 효과	포함	
표본수	3,774	
Nagelkerke R^2	0.3131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표 7>은 여러 연구(심한택 2005 등)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되어온 재량적 발생액을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델에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특성들이 미치는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기업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며,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비율이 높은 기업과 고경력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재량적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감리지적 유무로 평가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재량적 발생액이 높다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회계정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리지적여부는 사용할 수 없는 회계정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부회계관리 담당자를 늘리고, 고경력자가 많은 기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장에 존재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7〉 재량적 발생액

변 수	회귀계수	t−값
Intercept	0.031	1.19
Rate_Inter	−0.006	−0.39
CPA	0.009	2.17*
Exp	−0.000	−0.2
Rsales	−0.003	−2.7**
DtoA	0.045	5.91**
FCR	−0.054	−1.03
ROA	−0.007	−2.01*
CFOtoCL	−0.011	−3.52**
PRERR	−0.001	−0.35
Big4	−0.008	−2.93**
Aud_Opn	−0.013	−0.67
First	0.003	1.09
연도/산업더미 효과	포함	
표본수	3,774	
수정 R^2	0.0767	

주1) *, **은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주2) 변수의 정의 <표 1> 참조

Ⅵ. 결 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내부관리회계 제도는 회계정보 생산과정에서의 문서화 등 과정이 강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어진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의 효과적 측면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용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의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간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구성의 특성과 감리지적 유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을 전체 종업원수 대비 담당인력의 비율(인력의 양적 특성), 공인회계사 포함여부(인력의 전문성), 담당인력 경력(인력의 질적 특성)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체 종업원수 대비 담당인력의 비율과 공인회계사 포함여부는 감리지적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인력의 경력이 높을수록 감리지적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 중 공인회계사 포함유무가 내부회계관리의 운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또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서는 담당인력이 양적으로 많은 것 보다는 업무에 경력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내부회계관리 경력이 높은 인력일수록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제도의 목적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담당인력의 양적인 특성(담당인력 비율)과 질적인 특성(공인회계사 포함유무, 경력의 길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담당인력이 있고, 경력이 긴 기업에서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감리지적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추가 검증에서는 감리지적 가능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고경력자의 효과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위해 경력이 많은 인적자원의 투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전산부서나 기타부서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보다는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회계관련부서 내부회계담당자의 경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는, 내부회계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담당인력을 통해서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부회계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중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대용치인 감리지적 여부에 관해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감리지적 건수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감리지적기업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력의 특성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지 못했음을 들 수 있으며 현행 감리제도에서는 감리대상 기업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감리대상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은 재무보고가 적정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김구배 · 최승호 · 김미화. 2004. “분식결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찰 : 법인의 12월 결산집중화와 감사법인집중화를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4권 제1호 : 23－40.

김문철 · 황문호. 2007. “분식회계기업의 적발. 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 1－34.

김정애. 2007. “기업지배구조가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 297－324.

신현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107－128.

손성규 · 이호영. 2008. “감사인의 산업별 전문화와 감사품질 : 전기손익수정 및 감리지적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제13권 제1호 : 27－52.

손성규 · 정기위.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의 발생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18권 제2호 : 221－249.

신용인 · 최 관 ·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 173－207

심한택. 2005. “해외상장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 회계학연구 제30권 특별호 제1호 : 27－57.

안상봉 · 최승호. 2008. “감사위원회 품질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1호 : 99－126.

이명곤 · 최상태 · 장석진.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 이익조정 그리고 정보위험과의 관련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46권 : 61－97.

이준일 · 최선화 · 최종학.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Working Paper. 서울대학교

조현우 · 유경연,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 44호 : 119－145.

조희도 · 최연식 · 최종학. 2009.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한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 회계와 감사연구 제49권 : 1－42.

최 관 · 백원선.1998.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33－161.

최 관 · 최국현. 2003.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감리지적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8(2), 211－245.

최순재 · 김용식 · 김유찬.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보성”. 회계정보연구 27권 4호 : 181－210.

Beasley, M. S., J. V. Carcello, and D. R. Hermanson. 1999.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 1987－1997 An Analysis of U.S. Public Companies. SEC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Beneish, M. D. 1999. The Detection of Earnings Manipulation. *Financial Analysis Journal* 55(September/October) : 24－36.

Beneish, M. D., M. Billings, and L. Hodder. 2008.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information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83 (3) : 665－703.

Burgstahler, D. C. and I. D.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December) : 99－126.

Choi, J. H., S. H. Choi, C. Hogan, and J. I. Lee. 2009. The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nd accounting quality.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s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Spring) : 1－36.

Doyle, J., W. Ge, and S. McVay.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1/2) : 193－223.

Ge, W., and S. McVay. 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 (3) : 137－ 158

Hammersley. J. S., L. Meyers, and C. Shakespeare. 2008. Market reactions to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eaknesses under Section 302 of the Sarbanes Oxley Act of 2002.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3 (1) : 141－165.

Hogan. C. E., and M. S. Wilkins. 2008. Evidence on the audit risk model : Do auditors increase audit fees in the presence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 (1) : 219－242

Krishnan. J.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tional Control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80 (2) : 649－675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on Reliabiliy of Accounting Information

-Emphasis on FSS Enforcement Action-

Doocheol Moon* · Woo-Jin Park** · Sang-il Lee***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firm's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corporate governance.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all KOSPI-listed companies that disclosed its human resourcesin charge of corporate governance from 2002 to 2008. To proxy human 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we created three variables : the ratio of total workers to human resources for corporate governance, a dummy variable indicating existence of CPA in a firm, and years of experience a person in charge has. As for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gave it a value of 1 if a firm received FSS enforcement action and 0 if it did not.

Our empirical result shows no association between the ratio of total works to human re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years of experience and FSS enforcement ac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years of experience contribute to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strengthening internal monitoring. and we also have analyz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quantiativ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firms which has more human resources and higher experience are effective to reduce the matters on FSS enforcement action.

In the additional test, We found that this effect is strogner for firms with relatively small size, indicating that small sized firms need more experienced human 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to maintai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Finally, Our results show that experience of human resources in the area of accounting has strongest influence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SS enforcement action than any other area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ior researches in two aspects. One,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effect of human resources in corporate governance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wo, this stud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Government and Business, Yonsei University, First Author

*** Maste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uses more direct measure for reliabil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is FSS enforcement action.

<Key words> Internal, FSS enforcement action